



의안번호	제 2014 - 17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7. 21. (제5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82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5. 손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11
6.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22

<별첨자료>

- 강동혁,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
- 강동혁,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
-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검토”

I. 제82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4. 7. 7.(월) 16:00 ~ 18: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오기찬,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형량범위) 검토

4.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의 포함범위 관련

(1) 검토배경

- 지난 제80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제56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장물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기로 의견일치

01 일반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02 상습·누범장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장물			

- 제80차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일반장물’의 소유형인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아래 절도범죄의 ‘가치가 높은 재산’ 소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되, 절도범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소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금융기관(특경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단이 제시한 의견의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관한 절도범죄 유형정의상의 개별범죄 분류를 장물범죄 유형정의 내지 양형인자 정의규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 요구

(2)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포섭 및 분

류방식

(가)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를 특별재산에 포섭

-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일반지정문화재 등 절도)는 '가치가 높은 재산' 유형으로 포섭
-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범죄들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유형으로 분류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국가지정문화재 절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¹⁾에 해당하는 절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²⁾ 또는 제9조 제2항³⁾에 해당하는 절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서술식 기준을 두고 형량범위 상하한의 1.5배 가중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위 규정 및 송유관 내 석유의 사회적 보호가치, 범행의 조직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의 임산물 절도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의 임산물 절도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제73조 제3항
 -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 조제의 설비를 한 경우
 - 4. 임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 6. 상습으로 임산물 절취의 죄를 범한 경우

성, 위험성 등에 대한 처벌가치 등을 고려하여 송유관 내 석유 절도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유형으로 분류

(나)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도 재산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일정 유형의 재산을 특별재산으로 포섭하고, 가치의 정도 차이를 소유형 분류에 반영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는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는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으로 분류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는 ‘가치가 높은 재산’에 포섭
- ‘금융기관(특경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재산’에 포섭

(3)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 포함범위 검토

(가) 소수의견(강동혁, 최진녕, 황병헌) -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그 자체로 명확히 드러나는 범죄들에 한정(금융기관 절도, 임산물 절도, 송유관 절도 제외)

- 가중적 구성요건 부재
 - 장물범죄의 경우 장물의 가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상 장물죄밖에 없음 ⇨ 입법자가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유형을 달리하여 중한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본범의 처벌가치와의 구분

- 절도범죄에서 특별재산으로 분류된 범죄 중에는 재산 그 자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보다는 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등 범행방법과 태양 속의 처벌가치가 보다 크게 반영된 범죄(금융기관 절도, 송유관 내 석유절도), 재산 그 자체의 일정한 보호가치에 더하여 범행의 장소, 수단, 기회, 시간, 면적 등에 따른 여러 가중적 구성요건이 유형분류에 반영된 범죄(특가법상 임산물 절도) 등이 있는데, 재산 그 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위 범죄들의 경우 장물범이 본범에 일정 정도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본범이 완료된 이후의 장물단계에서 그 불법성과 처벌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례

- 실무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거나 취득, 알선한 장물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범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징역 8월 내지 1년 범위에서 선고형량이 정해지는 경향을 보임

(나) 다수의견(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오기찬, 이재권) - 절도범죄에서 규정한 모든 유형 포함

-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재산 여부는 사회·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 범정형 등을 종합하여 분류한 것으로,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장물범죄에서도 유효하게 고려하는 것이 양형기준 사이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
- 장물범죄의 특별재산 포함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절도범죄 기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재산 그 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범행방법과 태양 속의 처벌가치가 주로 반영되어 특

별재산으로 분류된 범죄의 경우에는, 장물죄 범행 당시 해당 장물이 절도죄의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요구하는 문구를 유형정의 등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장물범의 불법성 및 처벌가치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나. 형량범위

(1) 일반장물

(가)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 검토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장 물 죄	장물보관	수	0	0	5	0	11	0	3	0	3	1	0	0	0	0	0	0	23	6.61		
		비율	0.0	0.0	21.7	0.0	47.8	0.0	13.0	0.0	13.0	4.3	0.0	0.0	0.0	0.0	0.0	0.0	100.0			
	장물알선	수	0	0	7	0	31	1	24	1	14	20	1	1	4	1	0	0	105	8.84		
		비율	0.0	0.0	6.7	0.0	29.5	1.0	22.9	1.0	13.3	19.0	1.0	1.0	3.8	1.0	0.0	0.0	100.0			
	장물양도	수	0	0	4	0	1	0	1	0	1	0	0	0	0	0	0	0	7	5.71		
		비율	0.0	0.0	57.1	0.0	14.3	0.0	14.3	0.0	14.3	0.0	0.0	0.0	0.0	0.0	0.0	0.0	100.0			
	장물운반	수	0	0	3	0	9	0	8	0	2	0	0	0	0	0	0	0	22	6.82		
		비율	0.0	0.0	13.6	0.0	40.9	0.0	36.4	0.0	9.1	0.0	0.0	0.0	0.0	0.0	0.0	0.0	100.0			
	장물취득	수	0	3	15	2	53	0	49	0	27	29	0	0	3	1	0	0	182	8.16		
		비율	0.0	1.6	8.2	1.1	29.1	0.0	26.9	0.0	14.8	15.9	0.0	0.0	1.6	0.5	0.0	0.0	100.0			
	전체	수	0	3	34	2	105	1	85	1	47	50	1	1	7	2	0	0	339	8.13		
		비율	0.0	0.8	10.0	0.6	31.0	0.3	25.0	0.3	13.9	14.7	0.3	0.3	2.0	0.6	0.0	0.0	100.0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 평균형량(8.13월), 형량분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기본유형이라 할 수 있는 2유형(일반절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 6월-1년6월) 참조

■ 감경영역 : 4월-10월

- 형량분포(징역 8월 이하 68%, 징역 10월 이하 82%), 일반절도 유형의 권고형량범위(감경영역 : 4월-10월) 등 참조

■ 가중영역 : 1년-3년

- 장물범죄는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인·조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등 폐해가 큰 점, 이에 형법에서도 법정형을 절도죄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가중영역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해 현행 양형 실무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형법상 절도죄에 대한 기준인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2, 3 유형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3유형(대인절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 1년-3년) 참조

(나)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5년

○ 검토

- 장물범죄에서 특별재산의 개념을 절도죄(특별재산) 중 가치가 높은 재산(1유형)과 같이 규정하되,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2유형)의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기로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절도죄(특별재산) 중 가치가 높은 재산(1유형)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형량범위를 정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기본영역 : 1년6월-3년

- 문화재보호법 92조 3항(문화재장물)의 하한이 징역 2년인 점 고려

■ 가중영역 : 2년-5년

- 문화재 장물의 경우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되는 실무례를 찾기 어려우며, 실무상 장물죄가 본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하한을 다소 낮춤
- (춘천지법 2013고합3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산양 양도·양수 알선(야생생물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92조 3항 3호 위반)
- (대전지법 2013고합66,9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공모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인 불상 2점 운반

- (대전지법 2013고합66,9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일반동산문화재인 불상 2점 양도·양수 알선(문화재보호법 92조 3항 3호)
- 장물죄에서는 절도죄와 달리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다소 높여 5년으로 정함

■ 감경영역 : 1년-2년

- 감경영역 상한을 절도죄(특별재산) 중 가치가 높은 재산(1유형)의 감경영역(2년6월)과 동일하게 정할 경우 가중영역 하한(2년)을 초과하게 되어 영역 구분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음
- 감경영역 상한을 다소 낮추더라도 실무례의 대부분을 포섭할 수 있음

(2) 상습·누범장물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장물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검토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장 물 죄	상습장물보관	수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18.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상습장물취득	수	0	0	0	0	6	0	5	0	1	12	1	0	1	0	0	0	0	26	10.08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비율	0.0	0.0	0.0	0.0	23.1	0.0	19.2	0.0	3.8	46.2	3.8	0.0	3.8	0.0	0.0	0.0	0.0	100.0	20.60	
	특가법(장물)	수	0	0	0	0	0	0	0	1	0	2	3	0	68	29	3	5	1	112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9	0.0	1.8	2.7	0.0	60.7	25.9	2.7	4.5	0.9	100.0		
	전체	수	0	0	0	0	6	0	5	1	1	14	4	0	70	29	3	5	1	139	18.61	
		비율	0.0	0.0	0.0	0.0	4.3	0.0	3.6	0.7	0.7	10.0	2.9	0.0	50.3	21.0	2.1	3.6	0.7	100.0		

- 형법상 상습장물죄와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의 상습장물죄는 구성요건을 같이 하는데 반해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음(형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가법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형법상 상습장물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습·누범장물을 하나의 유형으로 두면서 형법상 상습장물죄와 특가법상 상습장물죄의 법정형 및 실무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함
- 다만, 상습장물 범죄를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가법상 상습장물죄의 법정형과 실무례를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정하되, 형법상 상습장물죄에 대한 고려가 형량범위 설정에 일부 반영되도록 함

◎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특가법상 상습·누범장물죄와 법정형 동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기본영역(2년-4년) 및 가중영역(3년-6년)

- 법정형이 동일한 일반상습·누범절도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감경영역 : 1년-3년

- 일반상습·누범절도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형량범위(1년6월-3년)를 차용하여 상한을 3년으로 정하되, 하한은 형법상 상습장물죄의 법정형 하한(1년 이상 징역)을 포괄하도록 다소 하향

(3)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01 일반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5년

02 상습·누범장물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장물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5. 손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가. 일반적 기준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1) 재물손괴등

○ 검토

■ 형량분포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재물손괴	수	3	6	55	1	80	0	17	0	6	5	1	0	1	0	0	0	0	175	5.81
	비율	1.7	3.4	31.4	0.6	45.7	0.0	9.7	0.0	3.4	2.9	0.6	0.0	0.6	0.0	0.0	0.0	0.0	100.0	

■ 기본영역 : 4월-10월

- 평균형량(5.81월), 형량분포 등 고려

■ 감경영역 : 6월 이하

- 기본영역 하한과의 중첩구간 고려

■ 가중영역 : 8월-1년6월

- 하한은 기본영역 상한과의 중첩구간 고려
- 상한은 형량분포(실무상 가장 중하게 선고된 사건이 징역 1년6월로 1건에 불과),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일반협박, 일반유기·학대 등)에서 가중영역 상한이 1년6월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 고려

(2) 공익건조물파괴

○ 검토

◎ 죄질 및 법정형이 유사한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공익건조물파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공용물무효(7년

이하 징역)보다는 높고 공용물파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보다는 하한이 낮음

- 공용물무효보다는 높게, 공용물파괴보다는 낮게 설정
 - 공용물무효, 공용물파괴 유형은 1/2 가중 규정이 있는 특수 공무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 조항까지 포섭된 것이며, 특히 공용물파괴의 형량범위는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음 ⇨ 공익건조물파괴의 형량범위를 기본적으로 공용물파괴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전체 균형에 맞음
- 기본영역 : 8월-2년
- 감경영역 : 4월-1년
- 가중영역 : 1년6월-4년
 -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보호법익, 법정형 상한, 아래에서 살펴볼 ‘지정문화재손상 등’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정함

(3) 지정문화재손상 등

○ 검토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은 지정문화재 손상, 은닉과 지정문화재 절취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2년 이상 징역)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문화재절취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에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형량 권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 동일한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인 만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 감경 : 1년-2년6월, 기본 : 1년6월-3년, 가중 :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등

○ 검토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은닉과 국가지정 문화재 절취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3년 이상 징역)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문화재절취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형량 권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동일한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 다만, 가중영역의 경우, 뒤에서 살펴보는 문화재특수손상, 문화재특수 손상치상, 문화재특수손상치사 형량범위와의 균형상 상한을 5년으로 조정
 - 일반적으로 절도와 손괴의 행위태양을 비교할 때 손괴의 가벌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형량범위 일부 하향조정은 무방
- 감경 : 1년6월-3년, 기본 : 2년-4년, 가중 : 3년-5년

나. 상습·누범·특수 손괴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 - 2년	1년 - 3년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 - 3년	2년 - 4년	3년-6년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 검토

■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폭처법 (상습재물손괴등)	수	0	0	0	0	5	0	4	0	0	1	1	0	0	0	0	0	0	11	8.00	
	비율	0.0	0.0	0.0	0.0	45.5	0.0	36.4	0.0	0.0	9.1	9.1	0.0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집단·흥기등손괴)	수	0	0	0	0	19	0	6	0	1	3	0	0	2	0	0	0	0	31	7.87	
	비율	0.0	0.0	0.0	0.0	61.3	0.0	19.4	0.0	3.2	9.7	0.0	0.0	6.5	0.0	0.0	0.0	0.0	100.0		
폭처법(집단·흥기 등재물손괴등)	수	0	0	4	0	131	0	60	1	12	27	0	0	1	0	0	0	0	236	7.43	
	비율	0.0	0.0	1.7	0.0	55.5	0.0	25.4	0.4	5.1	11.4	0.0	0.0	0.4	0.0	0.0	0.0	0.0	100.0		
합계	수	0	0	4	0	155	0	70	1	13	31	1	0	3	0	0	0	0	278	7.50	
	비율	0.0	0.0	1.4	0.0	55.8	0.0	25.2	0.4	4.7	11.2	0.4	0.0	1.1	0.0	0.0	0.0	0.0	100.0		

■ 법정형(1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 기본영역 : 8월-1년6월

- 징역 6월(55.8%)에 과반수의 사건이 분포되어 있으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하한을 기본영역 하한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규범적 상향 차원에서 하한을 8월로 정함
- 실무례 중 가장 높게 선고된 형인 1년6월을 상한으로 설정

■ 감경영역 : 4월-10월

- 통계 중 가장 낮은 형인 4월을 하한으로 설정
- 상한을 1년으로 정할 경우 98.9%의 사건이 감경영역에 포함
⇨ 상한은 징역 10월로 정함

■ 가중영역 : 1년-2년

- 형량분포, 기본영역과의 적정한 중첩구간 설정 등 고려해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상습·누범·특수협박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상한을 2년으로 설정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 실무례가 없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 법정형(2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의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함
 - 감경 : 6월-2년, 기본 : 1년-3년, 가중 :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법정형
 - 지정문화재손상(2년 이상 징역), 국가지정문화재손상(3년 이상 징역) 법정형 상한의 1/2 가중
 - 지정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국가지정문화재특수손상 : 3년-45년

- 아래 지정문화재손상,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지정문화재특수손상, 국가지정문화재특수손상을 포괄하는 하나의 형량 범위 설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 기본영역 : 2년-4년

· 법정형 하한이 더 높은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을 기준으로 형량범위 설정

- 감경영역 : 1년-3년

· 감경영역에서는 법정형이 더 낮은 지정문화재특수손상의 작량감정한 하한을 고려하여 지정문화재손상 유형처럼 1년을 하한으로 정하되, 상한은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상한을 참고하여 3년으로 설정

- 가중영역 : 3년-6년

· 기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문화재특수손상의 법정형 상한이 가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 상한을 6년으로 조정

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 다만, 2유형의 가중영역, 3유형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유사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할 때 다소 높아 전체 양형기준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보충의견 있음(최진녕 위원)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 검토

■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재물손괴치상	수	0	0	0	0	3	0	3	0	3	2	1	0	1	1	0	0	0	14	10.85
	비율	0.0	0.0	0.0	0.0	21.4	0.0	21.4	0.0	21.4	14.2	7.1	0.0	7.1	7.1	0.0	0.0	0.0	100.0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양형기준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 · 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기본영역 : 10월-2년

- 평균형량(10.85월), 형량분포(징역 10월에 21.4%) 등 고려해 하한 설정, 상한은 유사범죄 양형기준 참고

■ 감경영역 : 6월-1년

- 징역 6월 미만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유사범죄 양형기준 참고하여 하한을 징역 6월로 설정
- 징역 1년 이내가 78.5%를 차지하는 점 고려 ⇨ 상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함

■ 가중영역 : 1년6월-3년

- 기본영역 상한과의 중첩범위, 실무례 중 가장 중한 선고형이 징역 2년인 점, 유사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 실무례 없어 법정형(3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 참고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상해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폭행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경우 상해치사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와 죄질이 비슷하다고 보임 ⇨ 기본적으로는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 양형기준을 참조
- 다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불법을 반영하여 기존의

양형기준 설정관행보다 엄정한 형량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인 점, 아래 문화재특수손상치상 형량범위와의 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법정형이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법정형보다 낮지만 결과불법은 더 높음)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하한은 상해치사 양형기준을 참조해 설정

■ 감경 : 1년6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 실무례 없어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 법정형(무기, 5년 이상 징역) 동일한 ‘치상’범죄 양형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유인미성년자 상해등/인질상해·치상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죄질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피약취·유인미성년자 상해, 강간치상 범죄들보다는 낮다고 봐야 함
- 기본적으로 13세 이상 강제추행치상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범위

를 정하되, 기본영역 상한을 법정형의 하한과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하한을 상향 조정

■ 감경 : 2년6월-4년, 기본 : 3년-6년, 가중 :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 실무례 없어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 법정형(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유사한 '치사'범죄 양형기준
 - 특수공무방해치사(무기, 5년 이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피약취자등 치사(무기, 5년 이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아동학대치사(무기, 5년 이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공무방해치사, 피약취자등치사, 아동학대치사보다 죄질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피약취자등치사,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문화재특수손상치사에서 정한 형량범위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

■ 감경 : 2년6월-5년, 기본 : 4년-7년, 가중 : 6년-9년

라.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2년	1년-3년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3년	2년-4년	3년-6년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6.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논의 결과

가. 강요 유형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강요, 합의강요, 공동강요)	5년 ↓ (7년 ↓, 7년6월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10년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2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 강요	2년 ↑ (3년 ↑)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1) 일반 강요

○ 법정형⁴⁾ 비교

강요 (형법 § 324)	공동강요 (폭처법 § 2 ②) ⁵⁾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청법 § 16, 아동학대법 § 60)	
5년 이하	7년6월 이하	7년 이하	
폭행 (형법 § 260 ①)	협박 (형법 § 283 ①)	체포·감금 (형법 § 276 ①)	상해 (형법 § 257 ①)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 형량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강요	수	1	2	10	4	17	3	0	4	3	0	0	0	0	0	44	6.14
	비율	2.3	4.5	22.7	9.1	38.6	6.8	0.0	9.1	6.8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공동강요)	수	1	1	11	1	18	12	0	2	2	0	0	1	0	0	49	6.53
	비율	2.0	2.0	22.4	2.0	36.7	24.5	0.0	4.1	4.1	0.0	0.0	2.0	0.0	0.0	100.0	

○ 검토

■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폭행·협박죄

4) 선택형이 있는 경우 징역형에 한정하여 검토. 이하 같음

5) 아동학대법상 상습강요, 신고의무자의 강요(제6조, 제7조)에 대한 법정형도 같음

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으므로 폭행·협박죄에 대한 형량범위 보다는 높게 설정함이 타당함

- 같은 ‘자유에 대한 죄’로서 법정형이 동일한 체포·감금죄⁶⁾에 대하여 설정된 형량범위를 검토의 기준으로 삼음

■ 체포·감금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공동체포·감금 포함)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 강요·공동강요죄 관련

- 형량 분포는 강요죄는 4월, 6월이 60% 이상, 공동강요죄는 4월, 6월 및 8월이 80% 이상을 각 차지하고 있음 ☞ 체포·감금죄의 형량 분포보다 조금 가벼움
- 공동강요죄의 법정형은 강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나, 종래의 선고형량을 포섭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포·감금죄의 형량범위 참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 관련

- 아청법 제16조는 2013. 6. 19.부터 시행되었고, 아동학대법 제60조는 2014. 9. 29.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실제 선고 사례는 없음
- 법정형의 상한(7년)이 공동강요(7년 6월)보다 낮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가능함
-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

6) 형량분포는 체포죄의 경우 8월이 선고된 1건이 유일하고, 감금죄의 경우 6월과 8월이 60% 이상이며(평균 형량 7월), 공동감금죄의 경우 6월과 8월이 70% 이상임(평균 형량 8월)

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

○ 감경 : 8월 이하, 기본 : 6월-1년, 가중 : 10월-2년

- 체포·감금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울러 아청법·아동학대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 및 하한을 상향 조정
- 분석 사례 중 강요죄의 61.3%, 공동강요죄의 69.4%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2) 중강요

- 실제 선고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 논의는 불가능함
- 중강요죄(§326, 10년 이하의 징역)는 강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로, 형법상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범죄로는 중상해죄(형법 §258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중유기죄(형법 §271 ③, 7년 이하의 징역)가 있음

■ 중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중유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한 유기·학대(중유기)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 중강요의 경우 중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점, 기본범 죄의 법정형도 강요죄가 상해죄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 위를 중상해보다 다소 가볍게 설정

- 감경 : 4월-1년2월, 기본 : 8월-2년, 가중 : 1년2월-3년

(3) 상습·누범·특수강요

- 법정형 비교

상습누범특수 강요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상습누범특수 폭행	상습누범특수 협박
상습강요(폭처법 §2 ①) 누범강요(폭처법 §2 ③) 특수강요(폭처법 §3 ①)	상습체포·감금 (폭처법 §2 ①) 누범체포·감금 (폭처법 §2 ③) 특수체포·감금 (폭처법 §3 ①)	상습폭행(폭처법 §2 ①) 누범폭행(폭처법 §2 ③) 특수폭행(폭처법 §3 ①)	상습협박(폭처법 §2 ①) 누범협박(폭처법 §2 ③) 특수협박(폭처법 §3 ①)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상습특수강요 (폭처법 §3 ③) 누범특수강요 (폭처법 §3 ④)	상습특수체포·감금 (폭처법 §3 ③) 누범특수체포·감금 (폭처법 §3 ④)	상습특수폭행 (폭처법 §3 ③) 누범특수폭행 (폭처법 §3 ④)	상습특수협박 (폭처법 §3 ③) 누범특수협박 (폭처법 §3 ④)
3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 형량 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폭처법 (집단·흉기등강 요)	수	0	0	0	0	0	0	0	10	7	1	0	1	1	0	20	12.05
	비율	0.0	0.0	0.0	0.0	0.0	0.0	0.0	50.0	35.0	5.0	0.0	5.0	5.0	0.0	100.0	

- 검토

- 실무상 특수강요(폭처법 §3 ①) 사건만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정 형의 하한(2년)에서 작량감경 한 1년 또는 10월이 주로 선고되고 있음
-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되 법정형의 하한 을 작량감경한 형이 기본영역에 포섭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익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하며,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상습·누범·특수’와 ‘상습특수·누범특수’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설정된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난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 감경 : 6월-2년, 기본 : 1년-3년, 가중 : 2년-4년

나. 권리행사방해 유형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5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7년 ↓ (10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2월 - 3년
3	강제집행면탈	3년 ↓	- 8월	6월 - 1년	8월 - 2년

(1) 권리행사방해

○ 법정형 비교

권리행사방해(§ 323)	절도(§ 329)	재물손괴(§ 366)	횡령(§ 355 ①)
5년 이하	6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권리행사방해	수	0	0	33	1	85	44	1	8	11	0	0	0	1	1	185	6.89
	비율	0.0	0.0	17.8	0.5	45.9	23.8	0.5	4.3	5.9	0.0	0.0	0.0	0.5	0.5	100.0	

-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절도와 손괴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보다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있고, 법정형도 절도죄보다 낮으므로 형량범위를 절도죄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특히 손괴죄의 법정형상한이 3년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감경 : 8월 이하, 기본 : 6월-1년, 가중 : 10월-2년6월

■ 기본, 감경영역을 일반절도의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게 설정

- 징역 1년을 초과하는 사건이 2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의 상한을 1년으로 정함

■ 가중영역은 일반절도보다 다소 높게 설정

- 형법상 절도죄에 대한 기준인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2, 3 유형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3유형(대인절도)의 형량범위 내에서, 법정형이 동일한 횡령범죄 1유형(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형량범위(10월-2년6월)를 참조

-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도 선고되는 점을 참작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일반 강요죄보다 다소 높게 설정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 법정형 비교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325 ① ②)	중권리행사방해 (§ 326)	강도(§ 333) 준강도(§ 335)	상해(§ 257 ①)	중상해(§ 258①)	공용물무효 (§ 141 ①)
7년 이하	10년 이하	3년 이상	7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7년 이하

- 점유강취죄는 선고 사례가 매우 드물고, 준점유강취죄 및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선고 사례를 발견할 수조차 없어 양형통계를 기초로 한 형량범위 설정 논의는 불가능함
-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강도죄 및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법정형이 하한만 규정되어 있어 형량범위 설정에 직접 참조하기는 어려움
-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중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성요건상 공통점이 있고 법정형이 유사한 중상해죄의 형량범위를 참조할 수 있음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감경 : 4월-1년2월, 기본 : 8월-2년, 가중 : 1년2월-3년

-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중상해와 달리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 중권리행사방해는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유형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중상해죄보다 다소 낮게 설정

(3) 강제집행면탈

7) 최근 징역 4월 내지 10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소수 있었음

○ 법정형 비교

강제집행면탈(§ 327)	손괴(§ 366)	공무집행방해(§ 13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40의2)
3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강제집행면탈	수	0	0	23	2	87	44	0	19	18	0	1	1	0	0	195	7.26
	비율	0.0	0.0	11.8	1.0	44.6	22.6	0.0	9.7	9.2	0.0	0.5	0.5	0.0	0.0	100.0	

-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이고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임에도, 실제 권리행사방해죄의 평균형량이 6.89월인 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평균형량이 7.26월로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음
- 이는 권리행사방해가 취거 · 은닉 · 손괴 등 사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강제집행면탈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 법률행위⁸⁾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능적 · 계획적 범죄가 다수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감경 : 8월 이하, 기본 : 6월-1년, 가중 : 8월-2년

- 실제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기본, 감경영역은 권리행사방해죄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법정형의 차이를 참작하여 가중영역의 상하한은 다소 낮게 설정

다.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 등기절차, 소송절차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빈번함

(1) 강요 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5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10년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2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 강요	2년 ↑ (3년 ↑)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5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7년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2월 - 3년
3	강제집행면탈	3년 ↓	- 8월	6월 - 1년	8월 - 2년